

희망저축계좌 | 사업 안내문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-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◆ 지원예시

-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⇒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*
- *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 - (내일카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- (내일카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-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
 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자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기준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(단위: 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*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가입 및 유지 기준 (소득하한)	534,827	883,826	1,131,518	1,375,179	1,606,976	1,828,409	2,043,599
유지기준(소득상한)	4,714,657	4,714,657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
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,625원씩 증가

□ 해지요건

구 분	해지사유	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	- 3년간 통장유지 +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
	중도	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 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 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	
일부 지급해지	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만기성공금 지급 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환수해지	만기	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	중도	-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-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달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압류, 가압류 - 본인 요청 시	

□ 유의사항

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- 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1월	'23.12.23(토)~'24.1.22(월)	7월	6.25(화)~7.22(월)
2월	1.23(화)~2.22(목)	8월	7.23(화)~8.22(목)
3월	2.23(금)~3.22(금)	9월	8.23(금)~9.22(월)
4월	3.23(토)~4.22(월)	10월	9.24(화)~10.22(화)
5월	4.23(화)~5.22(수)	11월	10.23(수)~11.22(금)
6월	5.23(목)~6.24(월)	12월	11.23(토)~12.23(월)

○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달, 근로·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해당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참고사항
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해당 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◆ 희망저축계좌 I 관련 문의
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(☎1522-3690)
- 용인지역자활센터 (☎031-8005-8040)